재단법인 임진정유 동북아평화재단 정관

2018.07.26 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이 법인의 한국어 명칭은 "재단법인 임진정유 동북아평화재단 (이하 "재단" 라 한다)라 하고, 영문은 "The Imjin Jeongyu Northeast Asia Peace Foundation (영문약자 " IJNAPF "로), 한문은 "壬辰丁酉東北亞平和財團" 이라 표기한다.

제2조(소재지)

① 재단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2길 23-1 (2층)에 둔다.

② 재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사를 서울시에 두기로 한다.

제3조(목적)

재단은 임진·정유재란역사 재조명, 이순신·등자룡 두 장군과 그 휘하에서 전사한 무명용사들 및 희생한 백성들 추모, 전적지 복원과 역사공원 조성 등을 통한 동북아평화공원 건립, 공동번영 추구 및 국제 방문교류 증진 등과 관련한 균형 잡힌 임진·정유역사 재조명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**임진·정유재란 역사의 재조명 사업:** 정유재란은 민초들의 피땀과 희생, 한·중·일 무명용사 희생, 조선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등자룡 장군이 목숨을 바쳐서 이룬 승전의 역사인데, 그동안 역사왜곡으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였고, 저 평가되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임진·정유재란 역사에 대한 재조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2. **이순신과 등자룡 두 장군, 무명용사들과 희생된 백성들 추모사업:** 전사한 조선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등자룡 장군, 한·중·일 무명용사들, 희생된 수많은 우리 백성들을 추모하는 국제추모제, 남·서해안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지 체험탐방 이벤트 등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3. **전적지 복원 및 국가 동북아평화공원 조성:** [순천왜성]을 중심으로 국가 동북아평화공원을 조성하고, 공원에 전쟁역사관과 추모 · 평화 기념센터 등을 건립하여 자라나는 한·중·일 세대들이 [정유재란]에 대한 역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동북아 평화교육 체험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4. **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 추구:** 한·중·일 3국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불기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북아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, 자료교환, 고증사업 등 관련 사업추진을 하려고 함

5. **기타 재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업:** 관련 역사서적 출판, 방문객 유치 및 편의제공, 재단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 및 문화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 하고자함

제2장 임원

제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인
2. 이사 5인~7인 (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되,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음)
3. 명예 이사 1인: 재단의 지속적인 발전과 목적사업추진 협력을 위해서 순천시장을 의결권이 없는 당연직 명예 이사로 위촉하여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·청취할 수 있도록 함
4. 감사 2인

제6조(임원의 선임)

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재단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을 출연한 사람은 당연직 임원으로 이사장이 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제1대 이사장이 3년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고 사임하면 제2대 이사장부터 하는 것으로 한다.

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
제7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 간의 분쟁 ·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8조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임원의 직무)

① 이사장은 본 재단을 대표하고 본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재단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,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재단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0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
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3장 이사회

제11조(이사회의 구성)

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제12조(구분 및 소집)

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· 일시 ·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제13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14조(서면결의)

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5조(의결정족수)
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제16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 ·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4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7.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8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9. 기타 본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장 재산과 회계

제17조(재산의 구분)

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1. 기본재산은 재단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"별지 1" 과 같다. ※별지 1 재산목록은 정관과 함께 간인 필
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18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

재단의 기본재산을 처분 (매도·증여·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17조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19조(수입금)

① 재단의 수입금은 기부금,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.

제20조(회계연도)

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21조(예산편성)

재단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제22조(결산)

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22조(회계감사)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3조(회계의 공개)

① 재단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
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.

제24조(임원의 보수)
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5장 사무부서

제25조(사무처)

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6장 보칙

제26조(법인해산)

①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재단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
제27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28조(규칙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
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·날인한다.

2018년 07월 26일

발기인 대표 김 병 연 (인)

발기인 이 대 순 (인)

발기인 유 경 현 (인)

발기인 최 대 규 (인)

발기인 위 순 임 (인)